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년월일 : 2011년 9월 일
발 의 자 : 김명석의원외3인

1. 제안이유

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조건 완화(안 제3조)

- “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”을 “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”으로 한다.
- 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.(신설)

나.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(안 제4조)

- 참전명예수당 “월 2만원”을 “월 4만원”으로 인상
- 사망위로금 “15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인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4조 및 제6조제1항

다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 예산반영

라. 기 타 :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본문 중 “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”을 “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②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.
제4조제1호 중 “월 2만원”을 “월 4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호 중 “15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(생략)	제3조(지원대상자)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② 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.
제4조(지원사업)(생략) 1. 참전명예수당(이하 '수당'이라한다) 월 2만원 지급 2. 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. (생략)	제4조(지원사업)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 월 4만원 지급 2. ---------- 20만원 ----- 3. (현행과 같음)